

사내대학원 설치인가 매뉴얼

2025. 3.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I. 사내대학원 개요	1
II. 사내대학원 설치인가 절차 및 기준	5
III. 사내대학원 학사관리	9

- 붙임 1. 사내대학원 설치계획서(인가신청서) 서식
2. 시설·교원 및 재산 확보 명세서 서식
2. 참고 법령

I 사내대학원 개요

▶ 추진근거: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제4조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6조

□ 설치자

- (대규모 사업장)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종업원의 수가 200명 이상*인 사업장을 경영하는 자(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
 - *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도 포함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연합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연합체(연합체의 종업원의 수 200명 이상)
-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종업원의 수 200명 이상)

□ 신청인

- 설치자(단일 사업장, 공동 참여하는 복수 사업장, 연합체·협의체)의 대표가 '붙임1'의 설치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산업단지 입주기업 연합체 또는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인 설치자는 법인이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경우 사내대학원 설립을 위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의 대표자가 신청

□ 설치 분야

-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 *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별표] 】

- ① 반도체: △첨단 메모리반도체 산업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업 △첨단 패키징 산업 △연관 산업(자동차, 통신, 사물인터넷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반도체 산업
- ② 이차전지: △고에너지밀도 배터리 산업 △고용량 양극재 산업 △초고성능 전극 또는 차세대 배터리 산업
- ③ 디스플레이: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패널 산업 △친환경 퀀텀닷(QD) 소재 패널 산업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패널 산업 △나노 발광다이오드(LED) 패널 산업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 ④ 바이오: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산업

□ 입학 자격

- (소속) 아래의 ①~⑤에 해당하는 종업원 및 채용계약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①~⑤의 종업원으로 고용 약정한 자
 - * 사내대학원 학위를 수여 받은 후 채용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한 날부터 1년 이내
- ① 해당 사업장(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 사내대학원이 설치된 주된 사업장이나 그 사업장이 속한 산업단지에 고용된 근로자
 - 주된 사업장이나 산업단지 내에 직접 고용되지 않은 경우라도,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 여러 업체가 한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예: 하청업체), 주 사업장과는 별개로 고용된 다른 종업원. 따라서 협력업체나 외주업체에 고용된 종업원도 입학 가능
- ② 해당 사업장(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
 - 하도급 업체나 부품·재료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종업원. 즉, 주 사업장과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지만,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입학 가능

③ 해당 사업장(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동종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 주 사업장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즉, 산업 분야가 동일하거나 관련성이 높은 업체의 종업원도 입학 가능

⑤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해당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는 특정 산업 부문에서 인력개발 및 기술 향상을 목표로 하는 단체로, 이와 연관된 업체의 종업원은 입학 가능

○ **(학력)** △석사 학위과정 또는 석·박사 학위 통합 과정은 학사학위 또는 그 이상 수준의 학력이 인정된 자 △박사 학위과정은 석사 학위 또는 그 이상 수준의 학력이 인정된 자

□ 교육과정

○ △석사 학위과정 △박사 학위과정 △석·박사 학위 통합 과정

□ 수업연한 및 학위 수여

○ **(수업연한)** △석사 학위과정: 2년 이상 △박사 학위과정: 2년 이상 △석·박사 학위 통합 과정: 4년 이상(단, 석사 학위과정과 박사 학위과정의 각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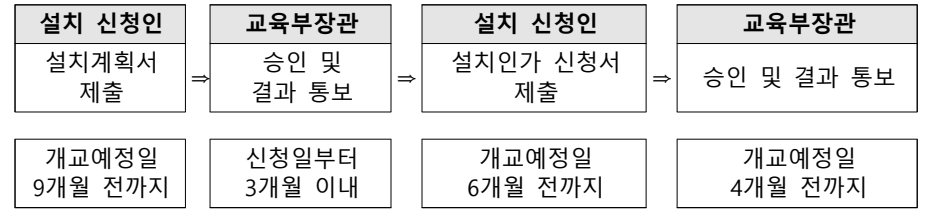
※ 단, 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해 수업연한 단축 가능(석사 1년 이내, 박사 6개월 이내, 석·박사 통합 과정 1년 6개월 이내 단축)

○ **(학위 수여)** △석사 학위과정: 석사 학위 수여 △박사 학위과정: 박사 학위 수여 △석·박사 학위 통합 과정: 박사 학위 수여

- 석·박사 학위 통합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 가능

II 사내대학원 설치인가 절차 및 기준

□ 설치인가 절차



※ 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인가 절차에 소요하는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

① 설치계획서 제출 (설치 신청인 → 교육부장관)

- 제출기한: 개교예정일 9개월 전까지 제출
- 제출내용: 명칭(사내대학원임을 나타내는 용어 포함 필수), 설치목적, 설치자, 위치, 학칙, 재정운영계획, 교육·연구용 시설·설비 확보 현황 및 확보 계획서, 개교예정일
- ※ 재정운영계획, 교육·연구용 시설·설비 확보 계획 기간은 향후 2년간이며, 석·박사 통합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향후 4년간 계획 제출

② 승인 통보 (교육부장관 → 설치 신청인)

-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관계부처 협의가 필요시 6개월 이내) 통보

③ 설치인가 신청서 제출 (설치 신청인 → 교육부장관)

-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제출

④ 인가 통보 (교육부장관 → 설치 신청인)

- 개교예정일 4개월 전까지 통보

□ 설치 기준

< 교사(校舍) >

- 교육과 연구 활동에 적합한 최소한의 면적 확보
- 교사시설 구분(「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5] '사내대학 교사의 구분' 준용)
 - (교육기본시설) 강의실(원격교육시설* 포함),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및 그 부대시설
 -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각호의 시설: ①100㎡ 이상의 원격 교육 학사관리실 1실 이상 ②100㎡ 이상의 서버 및 통신장비 관리실 ③원격교육 운영을 위한 1대 이상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 (지원시설) 도서관, 학생복지시설, 행정실 및 그 부대시설
-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6] '사내대학 교사의 기준면적' 준용)

계열	계열구분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
자연과학·공학	이학·해양·농학·수산·간호·보건·약학·한약부·공학 등	15

- 교사 면적 산출 기준
 - 편제 완성연도 기준 계열별 학생정원(이하, 편제정원)* × 학생 1명당 교사 기준면적 × 0.5
 - * 편제정원이 50명 미만인 경우 50명 기준으로 산출하며, 사내대학원은 첨단 분야에 한해 설치되므로 계열은 자연과학·공학 계열에 한정
 - 원격교육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교사 면적을 1/2까지 감축 가능

< 교원 확보 >

- (확보 시기) 개교 시 교원 정원의 2분의 1 이상을 반드시 확보, 나머지 교원은 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

- 교원 1인당 학생 수(「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7] '사내대학의 교원산출기준' 준용)

구분	자연과학·공학 계열
교원 1인당 학생 수(명)	20

- 교원 확보 산출 기준
 - 편제정원* × 1.5배 ÷ 교원 1인당 학생 수
 - * 편제정원이 50명 미만인 경우 50명 기준으로 산출하며, 사내대학원은 첨단 분야에 한해 설치되므로 계열은 자연과학·공학 계열에 한정
 - ※ (예) 첨단산업 분야 사내대학원 석사 과정(2년)의 입학정원이 30명인 경우:
 - 편제정원 = 입학정원 30명 × 수업연한 2년 = 60명
 - 교원 확보 수 = 편제정원 60명 × 1.5 ÷ 교원 1인당 학생 수 20명 = 4.5명 (소수점 이하는 올림)
 - 단,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필요
- 교원 자격 기준
 - (자격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해당하는 자

* [별표] 교원 및 조교의 자격 기준

(단위: 년)

구분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합계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합계
교수	4	6	10	5	8	13
부교수	3	4	7	4	6	10
조교수	2	2	4	3	4	7
조교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자					

※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간주

※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에는 산업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교원이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을 포함

- (겸임교원) 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국공립연구소 및 민간연구소 연구원*, 사업장 임직원을 겸임시킬 수 있음

* (예) 출연연 연구자가 실무·실험·실기 등 현장실무가 필요한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 대학에 일시적으로 임용되어 학생 대상 강의·지도 활동 가능

- (전문양성인 임용) 개별법상 특례 조항*에 따라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전문양성인을 전임교원(겸임·초빙 교원도 포함)으로 임용 가능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11조: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문인재의 육성을 목적으로 전문양성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경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그 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박사학위 과정 교원)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박사 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참여 교원 중 학칙으로 정한 인원은 설치 학기 개시일 이전 5년간 학칙으로 정하는 연구실적* 확보 필요

* 세부적인 연구실적 인정 범위와 기준 등에 대해서는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 범위 및 기준」(교육부고시 제2024-7호) 참고

○ 겸임교원 산정기준(「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6조 준용)

- 계열별로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 ÷ 9시간(소숫점 이하는 버림)

Ⅲ 사내대학원 학사관리

□ 학칙의 제·개정

○ (기재내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하여 기재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내용 】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 수업연한·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취소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 신청
8. 공개강좌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장학금 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12.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13. 학칙 개정 절차
14. 대학평의원회(「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교직원·학생 등으로 구성)에 관한 사항
15.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제·개정 절차)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교내 사전공고 및 심의를 거쳐 대학원의 장의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함

* 개정된 학칙 중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 가능

□ 학년도 및 학기

○ (학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하되 필요시 학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매 학년도 2학기 또는 3학기로 하고 매 학기의 수업일수는 15주 이상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매 학년도의 수업일수는 30주 이상

- (학기) 매 학년도 2학기 또는 3학기로 하며, 매 학년도의 수업일수는 15주 이상(시간제 등록생은 제외)
- (계절제 운영) 매 학기 취득 기준 학점의 1/2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절제 수업을 운영 가능

□ 교육과정의 운영 등

- (교육과정 운영)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과목의 이수능 평점·학점제*로 운영 가능
 - * (예시) 평점 4.5 만점, 최고학점을 A(90~100점)로 표시
- (운영방식) 사내대학원의 취지에 따라 해당 사업장 등에서의 직무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현장실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운영
- (학점인정) 학칙에서 정하는 학점을 인정하며 다만, ① 「고등교육법」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나 다른 사내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② 해당 사내대학원 입학 전에 교육과정과 연계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 1 인정
 - * 구체적인 내용 및 근무경력의 학점 환산 기준은 학칙으로 정함
- (공개강좌) 학칙으로 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 허용 가능
- (시간제 등록) 입학자격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해당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정하되 매 학기 취득 기준 학점의 1/2 초과 불가

□ 사내대학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사내대학원에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구성·운영) 대학원의 장이 지명하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규정
 - (심의 사항) 입학·수료 및 학위 수여, 전공 설치·폐지, 학생정원, 교육과정, 대학원 규정 제·개정, 그 밖에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수업일수 운영 및 이수시간

- (수업일수 감축) 천재지변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매 학년도 2주 범위 내 수업일수 감축
- (휴업일)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비상 재해 및 그 밖에 급박한 사정 발생 시 임시휴업 가능
- (학점당 이수시간)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규정

□ 학위 수여 등

- (수여 대상) 학점 이수 및 학위논문 제출자(석사 학위는 학칙에 따라 논문 외 다른 방법으로 심사 가능)
- (학위논문 심사) 사내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 위원이 심사
- (수여 학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일반대학원은 학술 학위, 전문대학원*은 전문학위 수여
 - * 필요시 학칙에 따라 학술학위 수여 가능
- (학위논문 공표) 박사학위자는 학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논문 공표
- (수여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자는 사내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위 수여 취소 가능

□ 편입학

-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에서 편입학 또는 재입학 허가 가능

□ 폐쇄

- 폐쇄 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신고
 -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재학생 보호방안, 학적부 처리방법 등 포함 신고

【붙임 1】 사내대학원 설치계획서(인가신청서) 서식

사내대학원 설치계획서(인가신청서)

(앞쪽)

설치자	법인명	전화번호
	신청인(공동 설치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시)종업원 수 *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포함	
	주소	

신청 내용	명칭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사내대학원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된 명칭
	목적
	설치자 (공동 설치의 경우 산업체를 모두 적음)
	위치
	운영규정(학칙) * 학칙 내용으로 같음
	향후 2년간 재정운영계획(석·박사 통합과정은 4년간) * 향후 2년간(석·박사 통합과정은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로 같음
교육·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현황 * 현재 교육·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 현황표로 같음함	
개교 예정일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하여 위와 같이 사내대학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학칙 1부 2. 향후 2년간(석·박사 통합과정은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1부 3. 교육·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 현황표 1부 4. 향후 2년간(석·박사 통합과정은 4년간) 교육·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서 1부 5. 실습시설 및 설비확보 계획서 1부 6. 교원확보 계획서 1부 7.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각 1부 8. 위치도 1부 9.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1부 10.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 인가신청서 제출 시에는 설치계획서에 따른 교원 등 확보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대신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신분증 확인으로 같음) 2. 건축물대장 등본 3. 토지대장 등본 4. 지적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분증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확인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2】 시설·교원 및 재산 확보 명세서 서식(인가 신청 시 첨부)

시설·교원 및 재산 확보 명세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0px auto;"> <thead> <tr> <th style="width: 30%;">개설학과</th> <th style="width: 30%;">학생 총정원</th> <th style="width: 4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td> <td>명</td> <td></td> </tr> <tr> <td></td> <td>명</td> <td></td> </tr> <tr> <td></td> <td>명</td> <td></td> </tr> <tr> <td>(계)</td> <td>명</td> <td></td> </tr> </tbody> </table>							개설학과	학생 총정원	비 고		명			명			명		(계)	명	
개설학과	학생 총정원	비 고																			
	명																				
	명																				
	명																				
(계)	명																				
구 분		개설학과	최소기준 (A)	확보계획 (B)	확보율(% (B)/(A)	소요금액 (백만원)	비 고														
1	교 사	㎡																			
			계																		
2	교 원	명		명	명	명															
			계		명	명		명													

교사(校舍) 확보 명세서					
시설별 구분	개설학과	확보면적 (㎡)	건축 소요금액		비 고
			㎡당, 건축단가(천원)	총소요금액(백만원)	
계					

※ 붙임서류 가. 교사 평면도(각 실 배치 명기) 및 배치도 1부

교원 확보 명세서									
(년 월 일 현재)									
개설학과	구 분	교원 성명	연령 (세)	직 급	전 공	최종학위 명 칭	담당과목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요예산 (백만원)
계									

※ 붙임서류 : 임용통지서 등 증빙서류

※ 참고사항 : 개교전 교원의 1/2이상 확보, 나머지 1/2은 개교후 학생정원에 맞게
연차적으로 편제 완성연도 전까지 확보(「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붙임 3】 관련 법령(「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1.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4조(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첨단산업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학원(「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 교육비용의 부담, 운영 및 폐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종업원”은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로 본다.

[법률 제20033호(2024. 1. 16.) 제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1월 16일까지 유효함]

2.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3조(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 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란 채용계약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한 날부터 1년 이내[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원”이라 한다)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후 채용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으로 채용될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내대학원의 설치 인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내대학원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사내대학원의 설치 인가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은 “향후 2년간(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4년간)”으로,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은 “향후 2년간(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4년간)”으로 본다.

제5조(사내대학원 교육비용의 부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교육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제6조(사내대학원의 설치기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제7조(사내대학원의 교사)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교사(校舍)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5와 별표 6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통합하여 적용한다”로 본다.

제8조(사내대학원의 교원)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교원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의 1.5배”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내대학원은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제9조(사내대학원의 학칙 개정)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학칙의 개정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제10조(사내대학원의 학년도·학기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사내대학원의 학년도·학기 등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사내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2. 박사학위과정: 2년 이상
3.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4년 이상. 다만,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각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내대학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석사학위과정: 1년 이내
2. 박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3.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1년 6개월 이내

제11조(사내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으로,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른 사내대학 또는 제50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인정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고등교육법」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나 다른 사내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제12조(사내대학원의 운영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내대학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원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대학원”은 “사내대학원”으로, “학교”는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제13조(사내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사내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석사학위과정 및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 및 채용후보자

2.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 및 채용후보자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사내대학원의 학생정원, 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평생

교육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항 및 제29조제1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7항”으로 본다.

제14조(사내대학원의 학위수여)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사내대학원의 학위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사내대학원의 학칙으로 정한다.

1. 사내대학원의 장은 학칙으로 정한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2. 사내대학원의 장은 학칙으로 정한 박사학위과정 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대한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위수여에 필요한 학위논문 제출, 심사 및 공표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45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제2항 중 “제24조에 따른 대학원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제45조 중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대학원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제50조제1항 중 “대학원”은 “사내대학원”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본다.

제15조(사내대학원의 학위 수여 취소) 사내대학원의 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내대학원이 폐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사내대학원의 폐쇄)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사내대학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그 신고 및 학적부의 관리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사내대학원”으로 본다.